

2026년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공고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신규 지정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가나다 순)

연번	유치기관명	연번	유치기관명
1	(의)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26	나누리병원
2	(의)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27	닥터쁘띠의원 명동점
3	(의료) 길의료재단 길병원	28	닥터에버스의원
4	(재)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29	대구파티마병원
5	(재)한국의학연구소 강남분사무소	30	대자인병원
6	(재)한국의학연구소 광주분사무소	31	더신사의원
7	(재)한국의학연구소 대구분사무소	32	드림성형외과의원
8	(재)한국의학연구소 부산분사무소	33	디에이성형외과
9	(재)한국의학연구소 수원분사무소	34	디엠피부과
10	(재)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분사무소	35	디오레의원
11	(재)한국의학연구소 제주분사무소	36	루비성형외과의원
12	(재)한국의학연구소 한국중부의원	37	르치과
13	JK성형외과	38	리엔장성형외과의원
14	VIP성형외과의원	39	리엔장의원 (명동)
1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40	리엔장의원 (홍대)
16	강남그랜드안과의원	41	리진
17	강동경희대병원	42	메디뷰 주식회사
18	경희의료원	43	메디코퍼
19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4	명동 닥터에버스의원
20	고려대부속안산병원	45	모즈의원
21	공덕 닥터에버스의원	46	미케이의원
22	기린성형외과	47	밝은눈안과의원
23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48	밴스의원 부산
24	김형진베이직성형외과의원	49	베이드의원
25	나나성형외과의원	50	부산제이엠제이

연번	유치기관명	연번	유치기관명
51	부천세종병원	82	(주) 광림컨설팅
52	비엘성형외과의원	83	(주) 리브어게인
53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	84	(주) 메디컬아시아네트웍스
54	삼성서울병원	85	(주) 뷰츠고
55	삼육부산병원	86	(주) 뷰파트너스
56	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	87	(주) 비에스피글로벌
57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88	(주) 에어맨
58	세정글로벌 주식회사	89	(주) 지아이엠에스오
59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90	(주) 하나글로벌로지스
60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91	(주) 휴먼케어서비스
61	쉬즈성형외과	92	주식회사 라미체1
62	아이디병원	93	주식회사 레드테이블
63	에이비성형외과의원	94	주식회사 아이메이그룹
64	에이탑성형외과의원	95	주식회사 에스큐뷰티
65	엣지성형외과	96	주식회사 이태
6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97	(주)와우보스
67	연세유라인치과의원	98	중앙대학교병원
68	원광대학교병원	99	지우의원
69	원진 성형외과	100	청담리투의원
70	위즈앤미의원	101	청담여신성형외과
71	유픽의원(강남점)	102	최혁한의원
72	유픽의원(홍대)	10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73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104	클럽미즈라미체의원
74	의료법인 서울호천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05	탑뷰티
75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106	픽셀랩성형외과의원
76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07	한강수병원
77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108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78	인천세종병원	109	한양대학교병원
79	제이필의원	110	현대병원
80	조선대학교병원	11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81	종로연세의원	112	화인(Fine)

○ 참고사항

- 지정기간 : '26. 10. 1. ~ '27. 9. 30.

※ 다만, 지정기간 중 행정제재 등을 통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지정된 업체는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 제작을 위해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원하는 언어(복수 가능)로 번역하여 '26. 9. 30.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visa@korea.kr)

※ 지정증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전자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유치기관 회원으로 가입 필요 (회원가입 절차 등은 별첨 안내 참조)

< 유 의 사 항 >

- 법무부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증심사 또는 우수 유치기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진료기록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료관광 유치기관(개인, 병·의원)은 피초청 외국인이 사증신청 시 예약한 병원, 실제 진료한 병원 등 관련 자료를 유지하여야 함

※ 제출한 기록이 추후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첨 1.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등

2. 의료관광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